「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가.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이 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해외시장 진입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

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가)「지방자치법」제117조

나)「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4조, 제6조

다)「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제15조

라)「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2) 필요성: 기업 발굴, 선정, 사업관리, 컨설팅, 상담 등을 위해 축적된 기업지원사업의 경험과 기업·전문가 네트워크가 있고,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에 위탁 필요.

다. 위탁 사무 내용: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업무 전반

1) 사업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창업기업 발굴 및 글로벌 진출 지원

3) 컨설팅, 콘텐츠 제작, 현지 체류비 지원

4) 선정기업과의 협약 체결・변경・해약

5) 선정기업 및 사업성과의 DB 구축・관리 등

라. 위탁시설(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해당없음

마. 위탁기간: 2027. 1.~ 2028. 2.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200백만원(시비)

(단위: 백만원)

계	사업비	간접비	인건비	비고
200	140	20	40	

사.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 ※2026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26.8.18)

아. 위탁구분: 재계약 (수탁기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자. 부서의견: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 제15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나. 예산조치: 2027년도 예산편성 예정

다.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2026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라. 성과보고서 및 성과평가 결과, 감사결과: 안건 참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 등의 각종 지원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본 사업은 기업 발굴부터 전문 컨설팅, 현지 체류 지원까지 깊이 있는 노하우가 요구되는 만큼, 관련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대규모 해외전시회(CES[1] 등) 참가 지원이 주된 사업인 만큼, 관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발판이 되도록 지원하고, 참여 기업들이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 CES: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가전·첨단 기술 박람회 [주관: CTA(미국소비자가전협회)]

※ 참가지원: 24년 9개사, 25년 4개사, 26년 8개사(지원중)